의안 번호	86

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백승규 의원 대표발의)



창 원 시 의 회

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백승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6

발의연월일 : 2026. 10. 15.

발 의 의 원 : 백승규・감규상・곽은정・권순재・김동엽
김원일・남호준・류성국・박강우・박연정
박현재・변보미・서명일・심임숙・오춘근
이무식・이우완・장병운・정순욱・조은우
진형익・하경석 의원(22명)

1. 제안이유

창원시에 장기간 거주한 시민의 경우 그의 부모가 비록 창원시에 주소를 두지 않았더라도 그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할 수 있도록 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창원시 장기 거주 유인을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창원시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사람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봉안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.(안 제6조제2항제1호의2)

3. 참고사항

가. 신·구조문대비표

나. 관계 법령

다. 현행 조례

창원시 조례 제 호

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시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사람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. 다만 해당 유골이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사시설(화장시설 및 장례식장은 제외한다)에 이미 안치된 경우는 제외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용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모가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참 고 **신·구조문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사용자의 범위) ① (생 략)	제6조(사용자의 범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봉안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한다.	② 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1의2.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시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사람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. 다만 해당 유골이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사시설(화장시설 및 장례식장은 제외한다)에 이미 안치된 경우는 제외한다.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
참고 **관계 법령**

■ 장사 등에 관한 법률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·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·보수를 하여야 한다.

참고 **현행 조례**

■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창원시가 설치한 시립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2.5.25.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삭제 <2025. 12. 31.>
2. “공설묘지”란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를 말한다. <개정 2025. 12. 31.>
3. 삭제 <2025. 12. 31.>
4. 삭제 <2025. 12. 31.>
5. "봉안실"이란 봉안시설 중 봉안당 및 봉안담 내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벽으로 구획된 구역을 말한다. <개정 2025. 12. 31.>
6. "유택동산"이란 화장한 유골을 봉안시설 등에 안치하지 않고 한 곳에 매장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. <개정 2021. 1. 29.>
7. “장례식장”이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. <개정 2025. 12. 31.>

제3조(창원시 장사시설의 설치 등) ① 창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 장사시설(이하 “시립장사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조성한다. <개정 2025. 12. 31.>

② 시립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. <신설 2025. 12. 31.>

[제목개정 2025. 12. 31.]

제4조(운영) ① 시장은 시립장사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21. 1. 29., 2025. 12. 31.>

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시장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시립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시립장사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25. 12. 31.>

④ 삭제 <2025. 12. 31.>

⑤ 삭제 <2025. 12. 31.>

제4조의2(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) 시장은 정부에서 수립하는 묘지·화장시설·봉안시설 등의 수급계획에 따라 중·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묘지 증가

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·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 [본조 신설 2012.5.25]

제5조(사용신고 등) ① 시립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. <개정 2015. 8. 7., 2021. 1. 29., 2025. 12. 31.>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의 내용이 다른 봉안시설(관내 봉안시설을 포함한다)에 안치되어 있는 유골을 이전하여 안치하려는 것인 경우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. <개정 2021. 1. 29., 2025. 12. 31.>

[제목개정 2025. 12. 31.]

제6조(사용자의 범위) ① 시장은 공설묘지에 무연고 시신 또는 연고자를 알 수 없는 행려사망자의 시신에 한정하여 매장을 승인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. 29., 2025. 12. 31.>

② 봉안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한다.

1.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창원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그 배우자(다른 지역 거주자를 포함한다)인 경우 <개정 2021. 1. 29., 2025. 12. 31.>
2. 시 관할 구역에 설치된 분묘 중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인 경우 <개정 2021. 1. 29.>
3. 삭제 <2025. 12. 31.>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한 유골인 경우

③ <삭제 2012.5.25>

[전문개정 2016. 12. 28.]

[제목개정 2016. 12. 28.]

제7조(사용료) ①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.

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가 수리된 사람은 사용료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.

[전문개정 2025. 12. 31.]

제8조(사용료의 감면 등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의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화장시설에만 적용한다. <개정 2025. 12. 31.>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 <개정 2025. 12. 31.>
2.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. 이 경우 희생·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. <개정 2025. 12. 31.>
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

<신설 2025. 12. 31.>

4. 「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 <신설 2025. 12. 31.>

5. 「창원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또는 인체조직기증자 <신설 2025. 12. 31.>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의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봉안시설에만 적용한다. <신설 2025. 12. 31.>
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(배우자는 제외한다)

2. 「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

3. 「창원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또는 인체조직기증자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은 봉안시설에 대해서는 최초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. <신설 2025. 12. 31.>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용신고를 할 때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5. 8. 7., 2021. 1. 29., 2025. 12. 31.>

[전문개정 2014.10.30]

제9조(사용기간) ① 공설묘지의 무연분묘 설치 사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. <개정 2021. 1. 29.>

②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사용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로 한다. <개정 2025. 12. 31.>

1. 유연유골: 15년

2. 무연유골: 5년

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기간을 15년씩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일의 60일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. <개정 2012. 5. 25., 2021. 1. 29., 2025. 12. 31.>

④ 삭제 <2024. 5. 31.>

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봉안시설에 부부의 유연유골을 합장하는 경우 사용기간은 합장한 날부터 새로 시작한다. <신설 2025. 12. 31.>

[제목개정 2025. 12. 31.]

제10조

삭제 <2025. 12. 31.>

제11조(사용개시기간)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를 한 사람은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안에 사용을 개시해야 한다.

1. 공설묘지, 봉안시설 및 장례식장: 7일
2. 화장시설: 3일

[전문개정 2025. 12. 31.]

제12조(시설의 사용) ① 시장은 공설묘지 및 봉안시설의 사용 순서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. <개정 2021. 1. 29., 2025. 12. 31.>

② 시장은 봉안실 안치단에 연번을 붙이고 그 순서에 따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. <개정 2021. 1. 29., 2025. 12. 31.>

③ 제2항에 따른 봉안실 안치단의 사용 위치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미리 신청해야 한다. <개정 2015. 8. 7., 2025. 12. 31.>

제13조(봉안실 설치 및 관리) ① 봉안실은 유연과 무연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. 29., 2025. 12. 31.>

② 유골함은 가로 2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높이 2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내구성이 강한 재질로 하여야 하며 안치단 전면에는 시장이 제공하는 부착물 외 사용자가 임의로 부착물을 설치할 수 없다.

③ 시장이 유골을 봉안한 경우에는 안치단의 전면에 사망자 성명, 봉안일 등을 명기하여 정결하게 관리해야 한다. 다만, 무연유골의 경우에는 유골함에 봉안일, 개장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. 29., 2025. 12. 31.>

제14조(사용권의 양도금지) 봉안시설 사용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. 다만, 무연유골 분묘의 연고자 확인 및 상속으로 승계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<개정 2021. 1. 29., 2025. 12. 31.>

[제목개정 2021. 1. 29.]

제15조(승계신고 및 사용자 관리) ① 봉안시설 사용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의 이전 또는 상속에 따른 승계를 한 경우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. <개정 2025. 12. 31.>

② 시장은 봉안시설 사용자의 주소를 연 1회 이상 확인 및 관리해야 한다. <신설 2025. 12. 31.>

제16조(사용권의 취소 및 소멸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사시설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. 29.>

1.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<개정 2021. 1. 29.>
2.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.

1. 분묘의 개장 또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봉안유골을 연고자에게 인도한 경우
2. 제11조에 따른 사용개시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<개정 2021. 1. 29., 2025. 12. 31.>
3. 제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<개정 2025. 12. 31.>

제17조(사용료 반환) ① 제16조에 따라 사용권이 취소 또는 소멸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해야 한다.<개정 2015. 8. 7., 2025. 12. 31.>

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봉안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을 해야 하며, 사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. <개정 2015. 8. 7., 2025. 12. 31.>

[제목개정 2015. 8. 7.]

제18조(금지행위 등) 봉안시설에 봉안하는 유골은 화장 후 유골함에 넣어 공중위생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, 봉안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 <개정 2021. 1. 29., 2025. 12. 31.>

1. 봉안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
2. 제례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
3. 장제에 사용할 음식물 외에 조문객 등에게 제공할 음식물의 반입 행위
4. 그 밖에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

제19조(변상 등) 사용자 또는 관람자가 시설물 및 기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. 1. 29.>

제20조(무연분묘의 설치기준) ① 공설묘지 내 무연분묘의 1기당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비석 등을 포함하여 10제곱미터 이내로 하며 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 1. 29.>

1. 분묘: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, 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. <개정 2021. 1. 29.>
2. 비석: 비석은 1개로 하며, 규격은 가로 25센티미터, 세로 12센티미터, 높이 6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.

② 무연분묘를 설치한 경우 시장은 비석에 관리번호, 사망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무연분묘의 연고자가 확인된 경우에도 분묘의 둘레석, 상석 등 제1항의 시설기준 외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.

[제목개정 2021. 1. 29.]

제21조(개장 및 유골의 인도) ① 공설묘지 내 매장된 시신을 개장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. <개정 2015. 8. 7., 2025. 12. 31.>

② 봉안시설 사용자가 봉안된 유골을 인도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유골인도 신청을 해야 하며 시장은 관계 사실을 확인한 후 유골을 인도해야 한다.<개정 2015. 8. 7., 2025. 12. 31.>

제22조(유택동산 이용 및 관리) ① 시장은 화장한 유골 중 매장하지 않거나 봉안시설에 안치하지 않는 유골을 무료로 유택동산에 처리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. 29., 2025. 12. 31.>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골은 유택동산에 산골(散骨)할 수 있다. <개정 2025. 12. 31.>

1.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지난 무연분묘 내 유골
2.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용기간이 지난 무연유골

③ 시장은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사용권이 소멸된 유연유골에 대해서는 3개월간 유골 인도 신청이 없는 경우 무연유골로 보아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동안 봉안한 후 유택동산에 산골할 수 있다. <신설 2025. 12. 31.>

④ 시장은 유택동산과 그 주변환경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. <신설 2025. 12. 31.>

제23조

삭제 <2025. 12. 31.>

「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백승규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

◈ 창원시 5년 이상 거주 시민의 관외 부모 사망 시 시립봉안시설 안치 허용을 통해 시민의 장례 부담 경감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의원발의조례안 검토 보고임

□ 조례안 개요

○ 조례안명 : 「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○ 상정시기 : 제15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(10월)

○ 발 의 자 : 백승규 의원(기획행정위원회)

○ 제안이유 : 시립봉안시설 안치 자격 확대를 통한 시민 편의 증진 및 정주 유인 강화

○ 기대효과

- 관외 거주 부모 사망 시 관내 시립봉안시설 안치를 허용하여 타지역 시설 이용 및 원거리 추모에 따른 시민의 시간적·경제적 부담 경감
- 창원시 5년 이상 거주 시민에 대한 체감형 장사 복지 혜택 제공으로 정주여건 강화

.

□ 개정 주요내용

항목	조 항	주요 내용
사용자의 범위 **신설**	제6조제2항 제1호의2	▸**(기존)** 사망일 기준 1개월 이상 거주 시민 또는 그 배우자(관외자 포함) ▸**(개정)** 기존대상 + 창원시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사람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(단, 장사시설에 이미 안치된 경우 제외)

□ 입법 필요성 : 있음

○ 창원시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시민의 관외 거주 부모가 사망할 경우 시립봉안시설 사용범위에 포함하여, 시민의 장례 부담을 경감하고 가까운 곳에서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됨

□ 재정부담 검토 : 제한적 수준

○ (예산담당관 의견)

- 단기적으로는 봉안시설 사용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, 장기적으로는 안치시설 소진 가속화에 따른 신규 봉안시설 확충 예산의 조기 투입 요인으로 작용함

○ (부서 의견)

- 관외 거주 부모의 안치를 허용할 경우 연간 450~850기*의 추가 수요가 예상됨

 *산출근거: 최근 5년간(21~25년) 창원시민이 신청한 관외자 화장 실적(연평균 450건)을 기준으로 추정한 2027-2040년 연간 봉안 수요량

- 다만, 2026년 제3봉안당 개관으로 45,008기가 확충되어 시 전체 봉안능력은 98,902기이며, 조례 개정 전후 만장 예상 시점은 2035년으로 추계됨에 따라 시설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
- 사용자의 범위를 창원시 5년 이상 계속 거주 시민으로 한정하고 장사시설에 이미 안치된 유골은 제외한다는 단서 규정으로, 단기간 내 안치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됨
- 부칙 규정으로 인해 조례 시행 전 사망하고 안치하지 않은 부모의 유골까지 적용되는 혼선을 예방함

○ (비용 추계) 미작성

- 기존 시립봉안시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, 조례개정에 따른 직접적인 봉안시설 건립비용과 인력 증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
□ 검토 결과 : 수용

○ 창원시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시민의 관외 거주 부모가 사망할 경우 시립봉안시설 안치를 허용하는 것은 시민의 장례 편의를 높이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에 부합함

○ 제3봉안당 개관으로 봉안능력이 확충되었으며, 조례 개정 전후 만장 예상 시점도 모두 2035년으로 추계되어 조례 개정이 시설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

참고 1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사용자의 범위) ① (생 략)	**제6조(사용자의 범위)** ① (현행과 같음)
② 봉안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한다.	② ----------.
1.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창원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그 배우자(다른 지역 거주자를 포함한다)인 경우	1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1의2.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시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사람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. 다만 해당 유골이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사시설(화장시설 및 장례식장은 제외한다)에 이미 안치된 경우는 제외한다.
2. 시 관할 구역에 설치된 분묘 중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인 경우	2. (현행과 같음)
3. 삭 제	3. (현행과 같음)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한 유골인 경우	4. (현행과 같음)

[부칙안]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사용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모가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참고 2 시립봉안시설 관외자 유입 영향 분석 수요 추계 (2025~2040)

창원시 시립봉안시설 관외자 유입 영향 분석 수요 추계 (2025~2040)

※ 기준: 봉안건수 연 5% 자연증가 / 조례 개정시 관외자 유입 적용(연 450건 기준, 연 5%증가)

연도	봉안능력	현행 유지 시 (관내 전용) 전년누적	당해관내	잔여기수	사용가능률	조례 개정 시 (관외자 유입 허용) 당해관외	누적관외	잔여기수	사용가능률	잔여기수 차이	비고
2025	53,894	41,497	4,079	8,318	15.4%			8,318	15.4%	0기	
2026	98,902	45,576	4,283	49,043	49.6%			49,043	49.6%	0기	제3봉안당 개관(확충)
2027	98,902	49,859	4,497	44,546	45.0%	450	450	44,096	44.6%	-450기	관외자 유입 개시
2028	98,902	54,356	4,722	39,824	40.3%	473	923	38,902	39.3%	-922기	
2029	98,902	59,078	4,958	34,866	35.3%	496	1,419	33,447	33.8%	-1,419기	
2030	98,902	64,036	5,206	29,660	30.0%	521	1,940	27,720	28.0%	-1,940기	
2031	98,902	69,242	5,466	24,194	24.5%	547	2,487	21,707	21.9%	-2,487기	
2032	98,902	74,708	5,740	18,454	18.7%	574	3,061	15,393	15.6%	-3,061기	
2033	98,902	80,448	6,027	12,427	12.6%	603	3,664	8,764	8.9%	-3,663기	
2034	98,902	86,475	6,328	6,099	6.2%	633	4,297	1,803	1.8%	-4,296기	★ 만장 임박(잔여 1,803기)
2035	98,902	92,803	6,644	-545	-0.6%	665	4,962	-5,506	-5.6%	-4,961기	★ 개정 전·후 동일 만장 도래
2036	98,902	99,447	6,976	-7,521	-7.6%	698	5,660	-13,181	-13.3%	-5,660기	
2037	98,902	106,423	7,325	-14,846	-15.0%	733	6,393	-21,239	-21.5%	-6,393기	
2038	98,902	113,748	7,692	-22,538	-22.8%	770	7,163	-29,701	-30.0%	-7,163기	
2039	98,902	121,440	8,076	-30,614	-31.0%	808	7,971	-38,585	-39.0%	-7,971기	
2040	98,902	129,516	8,480	-39,094	-39.5%	849	8,819	-47,913	-48.4%	-8,819기	

* 봉안건수 증가율(5%) = 최근 5년간(21~25) 봉안건수 증가율 평균
** 관외 유입 건수(450건) = 최근 5년간(21~25) 평균 관외자 화장 건수(신청인: 창원시민)
*** 사용가능률(%) = 잔여기수 ÷ 봉안능력

참고 3 공설봉안시설 안치 현황

(단위: 기, 기준: 26.07.31.)

구 분	설치년월	연면적(㎡)	봉안능력	봉안기수 (유공자 포함)	잔여기수	안치율(%)
창원시 전체		11,849	98,902	45,666	53,236	46%
상복공원		9,338	76,201	29,648	46,079	39%
1봉안당	'12. 2	2,592	14,216	**13,823**	393	97.2%
2봉안당	'18.12	1,690	13,808	**13,788**	20	99.8%
3봉안당	'26. 3	5,056	45,008	**1,913** (55)	43,095	4.2%
봉안담	'12. 2	–	3,169	**598**	2,571	18.8%
마산영생원	'04. 4	1,407	11,088	**8,698**	2,390	78.4%
진해천자원	'99. 9	1,104	11,613	**6,846**	4,767	58.9%

※ 안치율 = 봉안기수 ÷ 봉안능력

참고 4 2025년 경상남도 사회조사 (창원시민 지역거주기간)

(단위 : %)

지역	9년 이하	10~20년 미만	20~30년 미만	30~40년 미만	40~50년 미만	50~60년 미만	60~70년 미만	70~80년 미만	80년 이상	평균 거주 기간(년)
창원시	**6.6**	11.5	17.6	16.2	17.8	13.3	9.2	6.1	1.6	38.3

참고 5 타 지자체 관외자 허용 현황 (경남, 광역시, 특례시)

구분	지자체	관외자 허용 현황
경남	17	○ 허용: 9개(진주, 거제, 사천, 함안, 하동, 합천, 남해, 함양) ○ 불가: 6개(김해, 통영, 거창, 창녕, 고성, 산청) ※ 양산・밀양: 시설 없음
광역시	2	○ 불가: 2개(부산, 울산)
특례시	4	○ 허용: 3개(수원, 용인, 화성) ※ 고양: 시설 없음

연번	지역	공설봉안시설	시설명	관외자 안치
1	김해시	유	김해추모의집	불가
2	양산시	무	-	-
3	**진주시**	**유**	**안락공원**	**가능**
4	**거제시**	**유**	**거제시추모의집**	**가능**
5	통영시	유	통영시추모공원	불가
6	**사천시**	**유**	**사천시누리원**	**가능**
7	밀양시	무	-	-
8	**함안군**	**유**	**함안군공설봉안당**	**가능**
9	거창군	유	가조・거창・고제・남상・월평・가북공설공원묘지	불가
10	창녕군	유	창녕추모공원	불가
11	고성군	유	고성군공설봉안당	불가
12	**하동군**	**유**	**금오영당**	**가능**
13	**합천군**	**유**	**합천군공설봉안담**	**가능**
14	**남해군**	**유**	**남해추모누리**	**가능**
15	**함양군**	**유**	**함양군공설추모공원 봉안묘, 봉안탑**	**가능**
16	산청군	유	산청군공설묘지본향원	불가
17	**의령군**	**유**	**의령군공설납골당**	**가능**
18	부산광역시	유	부산영락공원 부산추모공원	불가
19	울산광역시	유	울산하늘공원	불가
20	고양시	무	-	-
21	**수원시**	**유**	**수원시연화장**	**가능**
22	**용인시**	**유**	**용인평온의숲**	**가능**
23	**화성시**	**유**	**화성시추모공원**	**가능**

붙 임 **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**

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 - 본 개정안은 기존 시립봉안시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, 조례개정에 따른 직접적인 봉안시설 건립비용과 인력 증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 -「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4조 제1호

> 제4조(비용추계 제외대상)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.
> 1. 의안의 시행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 - 본 개정안은 관외 거주 부모 사망 시 안치를 허용하는 사용자 범위 확대 사항으로, 신규 봉안시설 건립이나 인력 증원 등 직접적인 재정지출 요인이 발생하지 않음
 - 제3봉안당 개관으로 봉안 능력은 98,902기이며, 개정 전후 만장 예상 시점(2035년)이 동일하여 시설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

4. 작성자 :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